

- 단독 또는 공동수급(공동이행방식)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,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(역할)과 업무비율,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
  - \* 공동수급 희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: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
  -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
  -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% 이상이어야 함
  -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  -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
  - ※ 공동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(계약예규) 규정을 적용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

### 3 제안서 평가기준

#### □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

##### 가. 평가 원칙

-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(80%)와 입찰가격평가(20%)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
  - 기술능력평가(80%) : 연수기획 및 수행능력, 프로그램 적합성,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, 안전대책, 절대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